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주파수 할당에 따른 변경사항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목적이 한정된 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의 면제와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일부를 제외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주파수 할당에 따른 변경사항의 범위 확대(제15조제1항제3호)

- 전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주파수 할당에 따라 사용주파수 등이 달라지는 변경사항은 완제품만 가능하였으나, 인증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도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나. 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 규제 완화(제18조)

-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되고 유통기록 관리가 가능한 산업용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평가의 전부가 면제될 수 있도록 개선

다.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일부 제외(별표 1 제11호 라목)

-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단순 조명기능의 기자재와 같이 직류전원으로 동작하고 기능이 유사한 기타 조명기구는 규제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파법 제58조의2, 제58조의3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3-00호

「전파법」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00월 0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중 일부 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완제품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가”를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가”로 한다.

제18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산업용 기자재(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며, 유통기록 관리가 가능한 기자재에 한한다) : 수량제한 없음

[별표1] 제11호의 너목 1)의 대상기자재 중 “라목”을 “라목 1)에서 3)”으로 하고, 제11호의 라목 4)의 대상기자재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기타 조명기구(크리스마스트리용 조명기구, 충전식휴대전등, 조광기)
※ 직류전원만을 사용하여 동작하는 기자재는 대상에서 제외

부칙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3-00호, 2023. 00. 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적합성평가 신청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변경사항의 범위 등) ① 영 제77조의4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은 변경사항과 관련된 해당 적용기준만을 적용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3. <u>완제품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가 전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주파수 할당에 따라 하드웨어 변경 없이 사용주파수 또는 기술방식이 달라지는 경우</u></p> <p>② ~ ③ (생략)</p>	<p>제15조(변경사항의 범위 등) ① ----- -----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가 전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주파수 할당에 따라 하드웨어 변경 없이 사용주파수 또는 기술방식이 달라지는 경우</u></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8조(적합성평가 면제의 세부범위 등) 영 제77조의7제1항 별표 6의2 제1호 카목에 따른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합성평가의 전부가 면제되는 기자재의 범위와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4. (생략)</p> <p>5. <u><신설></u></p>	<p>제18조(적합성평가 면제의 세부범위 등) ----- -----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산업용 기자재(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며, 유통기록 관리가 가능한 기자재에 한한다) : 수량제한 없음</u></p>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제3조 관련)

11.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

[별표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제3조 관련)

11.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 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전자파 적합성	《생략》	적합 인증	적합등록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가. ~ 다. (생략)						
라. 조명기기류 :9kHz부터 400GHz 까지 주파수 대에서의 형광등 및 조명 기능을 가지는 기구 또는 장치	1) ~ 3) (생략) 4) 기타 조명기구 (크리스마스트리용 조명기구, 충전식 휴대전등, 조광기)	○			○	LIT21
마. ~ 거. (생략)						
너. 그 밖에 특수조건인 기가제 등 원장이 인정하는 기가제	1) 다목, 라목, 자목 1)에서 32) 및 37)에 해당하는 기가제로 직류 전원만을 사용하여 동작하는 기가제 2) ~ 4) (생략)	○			○	REC
더. (생략)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 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전자파 적합성	《생략》	적합 인증	적합등록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조명기기류 :9kHz부터 400GHz 까지 주파수 대에서의 형광등 및 조명 기능을 가지는 기구 또는 장치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조명기구 (크리스마스트리용 조명기구, 충전식 휴대전등, 조광기) ※ 직류 전원만을 사용하여 동작하는 기가제는 대상에서 제외	○			○	LIT21
마. ~ 거. (현행과 같음)						
너. 그 밖에 특수조건인 기가제 등 원장이 인정하는 기가제	1) 다목, 라목 1)에서 3), 자목 1)에서 32) 및 37)에 해당하는 기가제로 직류 전원만을 사용하여 동작하는 기가제 2) ~ 4) (현행과 같음)	○			○	REC
더. (현행과 같음)						